

인천지방법원 2021. 12. 21 선고 2020가단21706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

담당변호사 김다연, 한정식

변 론 종 결 2021. 11. 9.

판 결 선 고 2021. 12. 21.

주 문

1.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9 지분에 관하여 2020. 1.경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.

2. E에게,

가. 피고 B은, 1) 별지 목록 기재 제1, 2항 부동산 중 각 2/9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0. 1. 23. 접수 제211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, 2)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 중 1546/8073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0. 1. 23. 접수 제21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

나. 피고 C은, 1)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 중 248/8073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0. 1. 23. 접수 제21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2)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부동산 중 1/9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0. 1. 23. 접수 제21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3)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0. 1. 23. 접수 제21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4) 별지 목록 기재 제6항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0. 1. 23. 접수 제211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, 다.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부동산 중 1/9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0. 1. 23. 접수 제21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1. 피고들과 E 사이에 2016. 6. 15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한다. 2. 주문 제2항과 같다(말소를 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의 지분을 594/6184, 피고 C의 지분을 199/992로 표시하였으나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9. 1. 18. E을 상대로 ‘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04. 2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19. 2. 12. 확정되었다.

나. 망 F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는 배우자 피고 B과 사이에 E, 피고 C, 피고 D를 자녀로 두었다. 망인이 2016. 6. 15.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과 E은 2020. 1.경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

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순서대로 ‘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’이라 하고, 통틀어서는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‘이 사건 제1, 2 부동산은 피고 B의 단독 소유로, 이 사건 제3 부동산은 피고 B이 3092/3588 지분, 피고 C이 496/3588 지분 소유로, 이 사건 제4 부동산은 피고 C, D가 각 1/2 지분 소유로, 이 사건 제5, 6 부동산은 피고 C의 단독소유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(이하 ‘이 사건 협의분할약정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2020. 1. 23. 피고들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.

다. E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체결될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12호증, 을 제7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이 법원의 부평구청 및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기초사실에 의하면, 원고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이전에 E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),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, 대법원 2002. 6. 11.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),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).

2)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E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/9 지분을 전부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한 것은, E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E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, 채무자인 E의 위와 같은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.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중 E의 위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(원고는 이 사건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,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E의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).

3)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과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것이 아니라 E이 사실상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,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, E이 위와 같은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,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E의 상속포기신고가 2021. 8. 4. 각하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(인천가정법원 2021노단1106).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) 피고들은 E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인천 강화군 G 전 89㎡ 및 H 대 396㎡를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면,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E의 구체적 상속분을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), 피고가 제출한 을 제1, 2, 4 내지 6, 8호증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I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E의 특별수익 및 이로 인하여 E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원상회복의 방법

따라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E에게, 피고 B은 이 사건 제1, 2 부동산 중 각 2/9 지분,

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1546/8073 지분1)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, 피고 C은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248/8073 지분2),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1/9 지분3), 이 사건 제5, 6 부동산 중 각 2/9 지분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의, 피고 D는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1/9 지분4)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오승준

별 지

1. 인천광역시 강화군 J 대 125㎡
2. 인천광역시 강화군 J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집평가건
주택 25.28㎡
3. 인천광역시 강화군 K 답 3588㎡
4. 인천광역시 강화군 L 임야 2588㎡
5. 인천광역시 강화군 M 대 56㎡
6. 인천광역시 강화군 N
목조 스테이지붕 단층공장 80.1㎡
시멘트블록조 스테이지붕 단층공장 16.4㎡
철근콘크리트조,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
1층 69.9㎡
2층 45.9㎡. 끝.

1) E의 지분 $\frac{2}{9} \times$ 피고 B의 지분 3092/3588

2) E의 지분 $\frac{2}{9} \times$ 피고 C의 지분 496/3588

3) E의 지분 $\frac{2}{9} \times$ 피고 C의 지분 $\frac{1}{2}$

4) E의 지분 $\frac{2}{9} \times$ 피고 D의 지분 $\frac{1}{2}$